52. 조선업 기계장착,보존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접촉성피부염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기계장착,보존업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이○○은 2004년 10월 조선소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기계장착 업무와 보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퇴사 후 근무당시 보존(preservation) 작업 중 노출된 유리섬유에 의해 피부질화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양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요양 신청하였다.
- 2. 작업환경: 주 작업내용은 시추선의 기계를 장착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기계 보존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부질환을 일으킬만한 노출 가능인자는 기계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유리섬유로 된 천, 기계 오일 및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흄 등이 있었다. 용접작업 중 노출농도는 용접흄이 0.0887-1.7107 mg/m³으로 노출기준의 2-34% 수준이었고,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크롬 및 니켈 농도는 각각 0.0005-0.0007mg/m3, 불검출-0.0126 mg/m³으로 노출기준의 2% 미만이었다. 보존용 덮개로 사용하였다는 2종의 천에 대한 성분을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유리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규소 68.26%).
- 3. 의학적 소견: 2004년 10월 8일 입사하여 보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10-15일 후부터 피부가 가렵고, 곪고, 딱지가 앉아 약을 지어 먹었다고 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려움증이 있었고 퇴사 후에도 지속되었다. 처음에 피부병변과 증상은 팔, 목, 가슴 부위와배의 벨트 부위에 있었다고 하며, 현재 소양증을 호소하는 신체부위는 복부의 벨트 접촉부위와 고환 및 음경부위이다. 근로자는 당뇨, 통풍, 갑상선질환 등 소양증을 일으킬만한질병력이 없으며 입사 전에는 피부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이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건강보험 조회 기록에는 2003년 7월(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2004년 1월(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등 3차례에 걸쳐 주상병명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 4. 결론: 이〇〇의 접촉성피부염은
- ① 근로자가 작업 중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리섬유, 오일, 중금속(크롬, 니켈등)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 ② 재직당시 있었다는 피부증상이나 징후가 근로자의 증언대로 사실이라면 초기 피부병 변은 유리섬유에 의한 접촉피부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 ③ 유리섬유에 의한 접촉피부염은 샤워 등으로 쉽게 제거되며, 피부에 남아 자극을 일으키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소양증도 유리섬유 접촉부위와는 관계없는 음부, 복부 등이므로.

근로자 이○○의 현재 소양증은 재직 중 노출된 유리섬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